

고문 및 자문위원 운영 규정

제정 1999. 7. 26
개정 2009. 3. 3
개폐정리 2015. 6.30
개폐정리 2020. 6. 3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문 및 자문위원(이하 “경영고문”이라 한다)과 실무상 필요에 의한 고문(이하 “실무고문”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〈개폐정리 2015. 6.30〉

제2조 (정의) ① “경영고문”이라 함은 정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사회 의결로서 추대하는 고문 및 자문위원을 말한다. 〈개폐정리 2015. 6.30, 2020. 6. 3〉

② “실무고문”이라 함은 법률·법무·세무·노무 등 공사 실무의 자문을 위하여 사장이 위촉하는 고문을 말한다. 〈개정 2009.3.3〉〈개폐정리 2015. 6.30〉

제3조 (실무고문의 자격) 실무고문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법률고문 : 변호사
2. 법무고문 : 법무사
3. 세무고문 : 공인회계사, 세무사
4. 노무고문 : 공인노무사 〈개정 2009.3.3〉

제4조 (직무) ① 경영고문은 공사경영에 필요한 사장의 자문에 응하며,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.〈개폐정리 2015. 6.30〉

② 실무고문은 공사의 제반 실무에 관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〈개폐정리 2015. 6.30〉

제5조 (복무) ① 경영고문은 상근으로 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.

②실무고문은 비상근으로 한다.

제6조 (선임 및 임기) ①경영고문은 이사회 의결로 추대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<개폐정리 2020. 6. 3>

②실무고문은 사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제7조 (보수 및 대우) ①경영고문의 보수 및 대우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②실무고문의 고문료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8조 (기밀엄수) 경영·실무고문은 업무상 취득한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<개폐정리 2015. 6.30>

제9조 (기타사항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영고문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, 실무고문에 대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직제규정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에 대하여는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,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.

제3조 (다른 사규의 개정) ①사규관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(규정분류)중 제5편 5-11란의 “별정직원의복무및보수지급세칙”을 “고문 및자문위원운영규정”으로 한다.

②인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제2조제1항을 본문으로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조 (다른 사규의 폐지) 별정직원의복무및보수지급세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<2009. 3. 3>

이 규정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15. 6.30〉

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〈2020. 6. 3〉

이 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